

의안번호	2203067
의 퇴 인	서미화의원
회 답 일	2024.11.11.
추계번호	24C3079

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3조2 (심뇌혈관질환 전문인력의 양성)	○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의 연구, 치료 및 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		○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, 연구기관,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		○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(제3항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3조2 (심뇌혈관질환 전문인력의 양성)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심뇌혈관질환의 연구, 치료 및 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현재 보건복지부는 동법 제12조·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중앙 및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전문인력 교육사업을 일부 수행하고 있으나, 개정안에 따라

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대상이 대학 및 연구기관까지 확대될 경우 사업의 규모가 확장되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- 전국 14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 대해 ‘예방관리사업 운영지원’ 명목으로 1개소당 3.5억원씩(2024년 기준) 지원하고 있음
- 또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경우 2024년 1월 서울대병원이 최초 지정되어 교육 및 훈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있음

□ 다만, 현시점에 개정안에 따라 추가로 지정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수와 각 기관의 유형에 따른 교육 범위, 교육 수요 등을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어려우므로 추계가 곤란함

□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임슬기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슬기	02-6788-4740	sg.lim@assembly.go.kr